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

진정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피진정인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대표이사 박정훈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진정인들은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2021. 2. 13.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임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을 비롯해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들을 구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서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및 권고취지

1. 피진정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게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작, 편집, 방영 등에 있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방송 심의 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진정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나. 피진정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SBS’ 라 합니다)는 수도권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지상파 민영방송사입니다.

다. 피진정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은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는 국가기관입니다.

2. 사건의 경위

가. SBS는 2021. 2. 13. 20:40 경에 설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합니다)를 방영했습니다. 이 사건 영화는 그룹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다룬 영화로서 양성애자로 알려진 프레디 머큐리의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을 주요한 플롯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영화는 2018년 국내 개봉 당시 12세 관람가로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당시 약 1,000만명이 관람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 그런데 SBS는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하면서 임의로 극 중에서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 애인과 키스를 하는 장면 2가지를 삭제하였고, 배경 속에 남성 엑스트라 간의 키스신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프레디 머큐리가 이성과 한 키스 장면은 그대로 방영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머니투데이 기사)

다. 한편 SBS는 수도권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에도 SBS와 제휴를 맺은 다른 지역민방(G1, CJB, TJB, JTV, KBC, TBC, KNN, UBC, JIBS)을 통해 방송을 송출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영화는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방영되었습니다.

3. 피진정인 SBS의 차별행위

이 사건 영화는 음악가이자 성소수자인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삶은 성소수자인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눌 수 없으며, 따라서 머큐리가 동성 애인과 교제하고 키스하는 등의 장면들은 영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SBS는 자의적으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잘라냈습니다. 이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되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며,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6조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SBS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국에서 저녁 시간대에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하는 설 특선 영화라는 점을 진중하게 고려한 편집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지상파 채널에서 영화를 방영할 때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나 흡연 장면을 임의로 편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헤미안 랩소디> 역시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연휴 기간·저녁 시간에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적인 스킨십 장면은 편집했다”고 편집 이유를 밝혔습니다(참고자료 2 경향신문 기사).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 자신들의 행위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폭력, 흡연 장면의 경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명문으로 과도한 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¹ 이에 비해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하면서 SBS가 동성애를 폭력, 흡연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임의로 편집한 것은 그 자체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의도 하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영했다는 것 역시 이러한 차별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적 묘사와 관련하여 15세 이상 시청가의 기준은 ‘가. 신체 노출이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성적 신체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입니다.² 이 사건 영화에서 묘사되는 동성 간 키스 장면은 위 기준의 표현에 해당하고 따라서 삭제되거나 모자이크 처리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사건 영화는 극장에서 12세 관람가로 개봉된 영화로 당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약 1,000만명이 본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그보다 높은 등급으로 방영을 하면서도 극장 개봉 당시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SBS의 행위는 명백히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입니다.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6호, 2016. 12. 28., 일부개정) 별표 1

결국 SBS가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방송서비스의 공급, 이용에 있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권고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조사에 있어 고려해야할 할 지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진정 사건을 각하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본 진정이 내포하는 차별 행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내재 의견표명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일들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음

방송에서의 동성 간 키스 장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5년 JTBC에서 방영된 <선암여고 탐정단>에서 여성 출연

자 간에 키스 장면이 묘사되었고,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다루면서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장시간 클로즈업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내렸습니다. 청소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이 나온 방송제작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참고자료 2 오마이뉴스 기사).

이와 같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별적인 처사는 나쁜 선례로 남았습니다. 실제 언론 기사에 따르면 SBS 관계자가 위 사례를 들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에 편집을 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참고자료 3 미디어스 기사).

결국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서 이루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위가 연쇄적인 차별을 야기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선례에 대해 문제가 분명히 지적되지 않고 넘어가는 한 다른 방송사에서도 향후 유사한 핑계를 대며 마찬가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할 우려가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분명한 입장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차별적인 방송에 대해 의견표명을 한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소수자 차별적인 방송에 대해 의견 표명, 개선 권고 등을 한 바 있습니다. 가령 2013. 11. 21. 상임위원회에서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한 바 있고, 2014. 8. 20.에는 장애차별시정위원회에서 ‘「언론매체의 장애인차별 표현」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조선일보의 성차별적 보도에 대해 2016. 5. 25.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언론보도 등 미디어에서의 차별적인 소수자 묘사, 보도 등에 대해 의견표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권고하여 왔고, 이를 통해 실제로 차별적인 방송환경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이 SBS가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하면서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엄정한 조사를

통하여 개선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머니투데이 기사
2. 경향신문 기사
3. 연합뉴스 기사
4. 미디어스 기사

2021. 2. 19.

진정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가인권위원회 귀중